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도권 외 지역 등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선 지원〉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4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도권 외 지역 등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선 지원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11.

다. 회부연월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에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수도권 외 지역 등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선 지원

가. 개정안 요지

○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1)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2)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고(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음(안 제40조제4항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생략)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⑤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

현행	개정안
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40조³⁾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에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둬으로써,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현재 구축된 민간 데이터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7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역별 민간 데이터센터 분포 현황>

구분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소계
개수	68	10	3	8	3	92
비율	74%	11%	3%	9%	3%	100%

주: 2022년도 기준임.

자료: 데이터센터연합회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에서 재인용, 2023. 6.

- 이와 같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수도권 외 지역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과 지원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책 수립 및 지원 등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센터 관련 개별법이 정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지역별 차등지원의 근거를 이 법안에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각 개별법과의 정합성, 집행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력, 장비 국산화, 구축 컨설팅 등의 지원시책과 전자파 이슈 등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기피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전자파 신호등 설치, 대국민 홍보 등의 시책을 이미 추진 중임.

<시행령에 따른 데이터센터 시책 및 지원 내용>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 (지원의 방법)
1. 정책방향 및 목표 2.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 한편 개정안 제40조제4항의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서 제2항의 지원에는 전단에 따른 ‘필요한 지원’과 후단에 따른 ‘우선 지원’이 있으므로, 양자를 모두 포함할지 또는 둘 중 어느 지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구축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취소·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는 인허가·구축부터 운영 단계까지 관련 법률을 복합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데이터센터의 설립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력, 녹색건축물, 소방, 주차장, 예술품 등의 법률사항⁴⁾을 고려하여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건립된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 재난안전, 시설물, 온실가스 등 운영상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⁵⁾을 준수하여야 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 정도 등의 내용이 어떠한 시책(인허가, 전력, 기타법률 등)에 관한 내용인지 더욱 구체화 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책 방향에 따라 소관 부처 해당 소관 법률의 개정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8

4)

구분		소관부처
전력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산업부
안전시설 및 시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소방시설법」, 「지하안전 관리특별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문화예술 진흥법」 등	국토부 문체부
에너지·환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	산업부 국토부

5)

구분		소관부처
통신 재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과기정통부
시설 안전	「시설물안전법」 등	국토부
녹색건축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	환경부